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교육·훈련의 이수 현황을 관리하고,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등 운영상 미비점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국가 재정손실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등 교육·훈련 현황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1) 산림기술자등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현황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게 제출

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5조제5항, 별지 제9호의2서식)

- 1)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가)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나)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6의 제1호다목, 별지 제16호의2의 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의 서식)

1)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소속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

2)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

라.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리 일원화(안 제9조)

1) 지방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정보체계에 공고토록 된 사항을 처분권자인 지방산림청장이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일원화

마.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업무 일원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

1)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

바. 산림기술용역업 재개업신고 제도 마련(안 제13조, 별지 제22호 서식)

1)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기간을 마치고 재개업을 하려면, 별지 제19호 서식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를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

사. 부실 측정 범위 확대 및 별점 부과 결과 통보체계의 수시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1) 산림사업의 부실 정도의 측정을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전규정 강화

2) 발주청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 수시로 벌점관리 수탁기관에 통지

아. 산림기술자등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따른 이중등록 방지 신설(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31호 서식)

1) 산림기술자등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받은 발주청은 내용 확인 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입력 후 확인표를 발급

자. 수수료 징수 기관 명확화 근거 마련(안 제22조)

1) 자격·경력·실적 등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신청서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기관 명확화

차.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관련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에 대한 벌점관리 기준 강화규정 신설(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다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7호 및 제8호)

1)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벌점 5점, 중상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벌점 3점, 경상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벌점 1점을 부과

2) 이탈자 수정, 시간경과 및 교육시간에 따른 벌점의 소멸·감경기준을 명확히 규정

3)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에 따른 벌점은 건수별로 각각 부과

4) 중상자는 3주 이상의 병원 등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며, 경상자는 5일부터 3주 미만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가 요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 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 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기관은 제3항의 교육·훈련 현황표를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현황표를 제출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에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이하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청장은”을 “통보하고,”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산림청장”을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으로,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을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을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으로,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재개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업·폐업신고를”을 “휴업·폐업·재개업신고를”로, “휴업

· 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폐업·재개업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휴업·폐업신고”를 “휴업·폐업·재개업신고”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을 “설계·감리를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기별로 영 제20조제2항제9호”를 “영 제20조제2항제9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 받은 발주청은 내용 확인 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입력한 후 확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② 산림청장(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처리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③ 제2항의 수탁기관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 나목 부과기준 2.12의 주요 부실내용란 2)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을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에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1명이 발생한 경우	5
	2)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중상자가 1명이 발생한 경우	3
	2)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경상자가 1명이 발생한 경우	1

별표 4 제2호 다목 3.6의 주요 부실내용란 1) 중 “인원 부족이 발생”을 “작업원 운영계획과 다르게 작업원 운영”으로 하고, 같은 목 3.9의 주요 부실내용란 1) 중 “현장점검 횟수가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을 “기술지도 등이 소홀하여”로 하며, 같은 목에 3.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2	감리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1명이 발생한 경우	3
	2)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중상자가 1명이 발생한 경우	2
	2)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경상자가 1명이 발생한 경우	1

별표 4 제3호 가목 단서 중 “가사원”을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가목 중 “벌점이 소멸된다”를 “벌점이 모두 소멸된다”로 하며, 같은 표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에 따른 벌점은 건수별로 각각 부과한다.

8. 중상자는 3주 이상의 병원 등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며, 경상자는 5일부터 3주 미만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6 제1호 신청내용 라목부터 신청내용 바목까지를 각각 신청내용 마목부터 신청내용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신청내용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5천원
----------------	-----

별지 제9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신청인 중 “(산림청장)”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 립 청”을 “수탁기관의”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신청인 중 “(산림청장)”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신고인 중 “(산림청장)”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신고인 중 “(산림청장)”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청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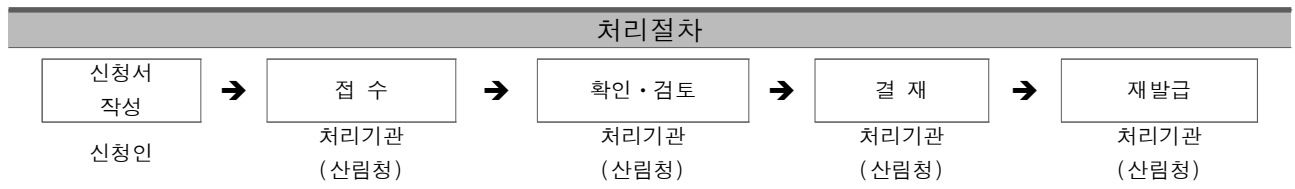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림기술경력증명서

1. 기술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비고

2. 자격 현황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번호	취득연월일	행정처분 여부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일

3. 근무처

회사명	등록번호	업종	근무자격	근무기간
				. . . ~ . . .

4. 경력

연 번	회사명		업종			등록번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 정도

5. 교육현황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세부분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사유	

발급 번호	연도-업종-세부분야-일련번호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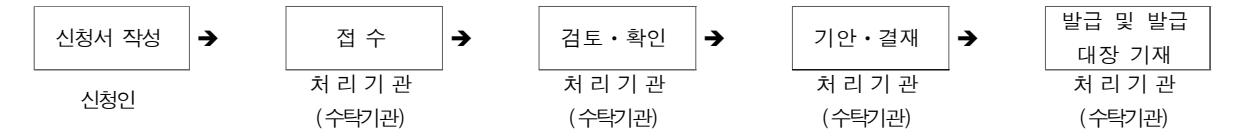
첨부서류 1.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기준) 1부.

유의사항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경력증명서 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기관은 제3항의 교육·훈련 현황표를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현황표를 제출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u>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u>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내

②

통

보고,

용을 통보받은 산림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을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폐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업관리 수탁기관-----

----- 별지 제19호서식-----

-----.

④ (현행과 같음)

⑤ 용역업관리 수탁기관-----

---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
-----.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재개업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휴업·폐업·재개업신고를 -----
----- 휴업·폐

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반기별로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

업·재개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폐업·재개업사실-----

-----.

④ -----
-----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① -----

-----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 제20조제2항제9호-----

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2조(수수료)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 받은 발주청은 내용 확인 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입력한 후 확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림청장(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처리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③ 제2항의 수탁기관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